

서울특별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(최유희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575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2월 05일

발 의 자: 최유희 의원(1명)

찬 성 자: 김경훈, 김규남, 김길영,
김동욱, 김영철, 김용일,
김원중, 김재진, 김지향,
김춘곤, 김혜영, 남궁역,
남창진, 문성호, 민병주,
박상혁, 박 석, 송경택,
신동원, 신복자, 유만희,
윤기섭, 이경숙, 이병윤,
이봉준, 이상욱, 이숙자,
이종태, 임춘대, 장태용,
홍국표, 황유정 의원(32명)

1. 제안이유

- 동 조례는 서울특별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에게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2013년 3월 제정되었음.
- 한편, 2019년 3월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가 제정·시행됨에 따라 교육청이 설치하는 위원회의 구성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별도로 마련됨.
- 이에 서울특별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수당 지급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존속 필요성이 사라지게 되었는바, 「서울특별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특별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를 폐지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해당 없음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폐지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15조(수당)와 중복되어 폐지되는 내용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 추계 대상이 아님

※ 2024년 서울시교육청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운영 예산

(단위:천원)

사업명(부서명)	사업내용	2024년 예산
위원회운영 소청심사위원회 (행정관리담당관 법무팀)	계	6,650
	· 운영비	6,050
	- 소청심사위원수당(100,000원+50,000원)×6명×3회	2,700
	- 소청심사위원회결정문작성료 250,000원×9건	2,250
	- 소청심사위원회속기료 550,000원×2회	1,100
	· 소청심사위원회운영사업추진경비 20,000원×10명×3회	600

(참고자료) 2024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서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오희선

추계세제팀장 이정수

추계분석관 이홍래

☎ 02-2180-7952

e-mail : hong1004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